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
특별회계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완석

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·관리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3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의 회계관계직원 명칭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,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(제5조)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

- 경리관 ⇒ 재무관, 분임경리관 ⇒ 분임재무관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해

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5조 중 ‘경리관’을 ‘재무관’으로, ‘분임경리관’을 ‘분임재무관’으로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에서 사용하는 명칭의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○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조례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